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중구 제1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지원계획 수립('23.4.21)에 따른,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변경 및 실태 조사 의무화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청년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하고자 하며, 고립 청년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지원사업의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심리·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납니다. 고립의 예방 및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에 대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고립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